=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4 - - - - - - - - - - - - - - - - -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2. 5

다. 상 정 일 자 :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8. 2.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삼림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관내 통장자녀중 품행히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던 통장자녀 장학금을 통장연합회를 비롯한 다수 통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폐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장 역할의 축소와 통장 활동수당 인상 등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통장 상호간 위화감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장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통장들이 장학금 지급제도의 폐지를 건의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